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30

제안연월일 : 2019. 4.25.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27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광고물 실명제에 자사광고를 추가하고 실명제 표시방법 및 관리·운영 사항을 보완하며,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완화하며,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함 (안 제3조의2 신설)

-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제 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보완함(안 제26조제2 항 및 제3항)
- 광고물 실명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 의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 광고제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2호 서식 신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 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

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층"을 "5층"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제1항제7호 중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간판이「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페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이하로"를 " 이내로"로 한다.
- 제4조제3항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로 한다.
- 제5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 재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벽면에는"을 "벽면에"로 한다.
-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 중 "모바일로"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 자적방식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2항 관련)



[예시]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비고

(예시)

2. 표시내용 : '201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제26조제3항 중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를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 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 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	의 표시방법) ①
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	
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	
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3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시 심의위원회</u> 의 심의	<u>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u>
를 거쳐 고시한 지역	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
	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
	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
	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

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 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 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 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 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 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 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 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 여야 한다.

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 법) ① -----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u>3층</u>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목의 경</u>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 략)

- 2. (생략)
-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 (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을 사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1.	<u>5층</u>
	<u>다만, 다음 각 목의</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
	<u>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u>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
	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
	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 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 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 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 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신 설>|

4. ~ 6.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 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 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 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 7. 간판이 「건축법」등 관련규정

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 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 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 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 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 9. (생략)

- ② (생략)
-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 1. (생략)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

<u>을 위반하여 장문(개폐기능이</u>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u>이내로</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 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 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
	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
	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
	<u></u> ,
(4)	(현행과 같음)
제	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1.	(현행과 같음)
2.	

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 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 다.

- 3. (생략)
-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생 략)
-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 다.

가. ~ 라. (생 략)

- 2. ~ 4. (생 략)
- ③ ④ (생 략)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 6조에 따라 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 의 여건상 표시가 적합하지 않

<u>의위원회</u>
3.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벽면에</u>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로 인식 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 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 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 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 ③ -----등의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 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 다.

2)		- <u>별지</u>	제2호	서
	<u>식에서</u>	정하는	모바일	·전자격	넉방
	<u>식 등</u> -				

- -----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 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 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 <신 설>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 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 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 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 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